

수정신고기간내에 제출가능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권까지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소득에서의 공제배제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어도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본인기본공제만 적용한다. 따라서 배우자·부양가족 등 국내거주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는 아무런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③ 수시부과결정시 본인공제만 적용

본 법 제82조는 조세포탈우려, 장기휴·폐업상태의 경우 조세채권조기확보를 위해 수시부과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수시부과후에 확정신고가 가능하면 확정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종결되기도 한다.

엄밀히 말하면 수시부과결정은 예납적인 면도 있으며 납세자가 아무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확정결정신고가 되기도 한다. 이때는 임시적 뜻도 있고 납세자의 자발신고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본인(소득자) 기본공제만 적용하며 어떤 다른 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3. 적용세율 및 납부세액계산

1) 적용세율

(1) 세율의 개념과 적용세율

6%부터 38% 다단계 초과누진세율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는 각 소득별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본 세율은 근로소득·종합소득·퇴직소득에 모두 적용되는데 현재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규정되어 있다.

종합소득 (근로소득 포함) 과세표준	적 용 세 율
1,200만원 이하	6%(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백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백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1,590만원+8천8백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원 초과	9,01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38%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2. 1. 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소득세율의 개념과 결정

소득세율은 개인이 창출한 원천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국가에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배분비율인데, 각 개인의 1년간 과세소득에 일정비율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쉬운 말로 국가의 질서유지태두리내에서 각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개인의 가치분 몫과 국가의 공적처분 몫을 배분하는 비율인데, 7 : 3제, 6 : 4제 등 여러 형태로 책정된다.

그 나라의 과세소득자의 숫자, 과세소득 노출정도 각 개인의 소득금액규모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매년 혹은 자주 변동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 실명제 정착으로 과세원천이 많아지고 소득의 공식

적 노출정도가 커지므로 세율이 점차 하향조정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주변경쟁국과의 외자유치 경쟁력 등을 위해 세율이 낮아지는 영향도 받고 있다.

세율의 종류

세율은 소득이나 재산의 성격에 따라 일정비율의 비례비율과 일정금액의 정액세율이 있다.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세율은 비례세율이며, 이 중 소비세율은 일정비례세율이다.

단일비례세율

일반재화·용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거래금액의 10% 단일비례세율로 과세되는데, 단일비례세율은 소비세 특정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관세 등과 같이 거래금액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품목별로 일정한 비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단계초과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은 소득이나 재산과세금액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율을 높여 적용하는 것이다. 대부분 일정금액까지는 기존 낮은 세율, 초과소득이나 재산금액은 초과 높은 세율을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초과누진세율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평균세율과 한계세율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가 용인되는 소득세제에서는 소득금액에 대한 실제의 과세액비율인 실효세율과 그러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공제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대한 실제의 과세액비율인 평균세율의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실효세율은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액비율로서의 평균세율이다.

한계세율은 소득이나 재산금액의 증가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비율이다.

(2)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상의 초과누진세율

소득세 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서 과세표준에 이를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과표에는 점차로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세율구조이며,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하여도 세율의 변동이 없이 같은 세율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누진도와 최고세율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사회의 소득계급별 분포와 공평의 관념에 대한 시대적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질 성질의 것이다.

실효세율은 현행법상 과세표준별로 설정된 세율을 현실적으로 소득금액에 대한 최종부담세액의 비율로 대비해 보는 세율이다. 이것은 소득공제제도나 각종 세액공제제도 또는 감면제도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표면세율보다 낮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에 대한 기본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나누어진 초과누진세율에 의한다.

현행 적용세율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계급별로 5단계로 되어 있다.

☒ 종합소득세율표 ☒

근로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2010년부터)
1,200만원 이하	6%(과세표준×6%)
4,600만원 까지	소득×15% - 108만원
8,800만원 까지	소득×24% - 522만원
3억원까지	소득×35% - 1,490만원
3억원 초과	소득×38% - 2,390만원

1년 미만 과세표준도 전액 적용

이러한 세율을 산출된 과세표준에 액면 그대로 적용한다.

법인세의 경우는 1년 미만의 사업연도인 경우는 1년으로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지만 소득세의 경우는 과세기간이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을 환산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1년 과세기간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법인은 사업기간·과세기간이 분명하지만 개인은 소득창출의 발생원천이 불분명하므로 무조건 1년으로 본다.

따라서 소득자의 과세소득창출이 그 해 10월부터 3개월간만에 1,500만원 이더라도 1년 환산한 $1,500\text{만원} \times (12/3)\text{개월} = 6,000\text{만원}$ 으로 하여 단단계세율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 그대로 1,500만원을 1년 소득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세액은 $1,200\text{만원까지 } 6\% + \text{초과액의 } 15\% = 1,200 \times 6\% + (1,500 - 1,200) \times 15\% = 72 + 45 = 117\text{만원}$ 이 된다.

2)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매월 근로소득지급시 원천징수세액 산출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본 법 제134조가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제목개정)
-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지급시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지급자가 각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지급시 기본세율(다단계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이는 인적공제사항 등을 감안하여 월금액으로 책정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 ① 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2010. 2. 18 개정)

간이세액표 규정이유

근로소득세는 소득자의 숫자 자체가 많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본 법 제55조에 의한 일반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실무상 번거로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경감시키기 위해 본 법 제129조는 1년의 과세기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근로소득세 계산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감안하여 적용 산출된 세액표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매월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시행령 제189조는 별표 2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전자계산조직 세액표 준용

근로소득계산과 원천징수세액계산을 소득지급자 자신의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한 원천징수가 아니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매월분의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소득공제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 해당 소득세로 하고 여기서 세액공제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3) 근로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

(1) 세액공제적용개요

세액공제의 종류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는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의 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설비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데, 근로소득이 국외에서 원천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만 공제된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서의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성격상 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근로소득이 포함되는 종합소득에서도 공제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다음 표로 비교한다.

공제 순위	구 분 종 류	근로소득에서만	종합소득에서도	퇴직소득에서
		공제되는 것	공제되는 것	공제되는 것
1	외국납부세액공제	○	○	×
2	기장세액공제	×	○	×
3	배당세액공제	×	○	×

4	근로소득세액공제	○	○	×
5	재해손실세액공제	×	○	×
6	조특법상 세액공제	×	○	×

(2)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혹은 필요경비산입

국내거주자(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세금의 선납부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이 적어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대부분 사업소득임)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2010. 12. 27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27 개정)

세액공제 · 경비산입 방법과 산식

외국에서의 외국소득세액으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제간 이중과세의 방지차원에서 일단 해외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선납한 금액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인데, 확실한 공제혜택을 주기 위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산입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외국납부 세액공제} = \text{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 \leq \text{종합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종합소득금액}}$$

(즉, 전체소득에 비해 국외원천소득이 적은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많이 납부하였다더라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하여 소득기여도에 비한 과중한 세액공제를 제한하고 있음)

혹은, 외국납부세액자체를 종합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반영함.

(위의 산식에서 외국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액 또는 퇴직소득세액에 비해 지나치게 커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적게 계산되거나 결손이 나는 경우 세액공제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결손금이 나도록 하며, 이를 다음 기로 이월하여 차기의 세액이 적어지도록 함. 주로 종합소득내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필요경비로 반영되는 것임)

세액공제한도 초과시 다음 5년간 이월공제

필요경비산입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적자(-)로 되더라도 전액 차기이월과 상쇄되므로 별 문제없다.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 종합

소득산출세액에 대한 국외원천소득비율계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 전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제한도초과액을 소멸시키면 납세자의 실제 지출액이라는 면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의 과세기간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외국감면세액의 납부인정과 세액공제·경비산입 가능

국내거주자(소득자)는 무제한납세의무자로 전세계소득이 합산과세되므로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합산되는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이 소득세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받은 만큼의 금액을 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하지 않았다하여도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상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규정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는 외국의 특별조세혜택에 의거 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만큼을 제외한 실제 외국납부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으로 인정하면 어차피 국내의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감면의 효과가 없어지므로 납세자의 기존이익·혜택을 계속 보호하거나 존속시키기 위함이다.

즉 외국에서의 특별감면자체가 그대로 국내에서도 효과가 있음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단지 상대방과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외원천소득감면분에 한한다. 이는 조세협약에서 나온 정신이기 때문이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개념과 범위

일반적·정규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자)는 일반급여 및 잉여금 처분급여 등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 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하며, 1년에는 연 50만원 까지 공제된다.

중전에는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공제하였다. 따라서 월급이 매월 불균등한 경우 월급 많은 달은 한도에 걸리고 적은 달은 한도액 보다 적은 금액이 공제되어 1년으로 계산하면 50만원 공제가 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 매월한도 불이익 규정을 삭제하여 99년 소득부터는 매월 한도 제한없이 연 기준으로 제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이유와 목적

세액공제는 세금의 자진신고납부를 적법히 이행하고 있음에 대한 보상 및 반대급부적 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소득지급자가 매월 혹은 연말에 원천징수와 정산에 의거 일괄계산하는 것이므로 소득수취자의 의사나 행위에 관계없이 전액 자동신고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성실신고납부에 대응하여 세액의 30% 혹은 55%를 공제하여 일정소득이나 세액 범위에서는 세율을 30%만큼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가 원천적으로 과세제외하는 것인 반면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비율을 감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납세금액이 나오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과세형평과 국민개세의 개념을 모두 달성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말그대로 근로소득에만 적용된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일반적 개념의 급여인데 봉급·보수·세비·임금·상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밖에 법정잉여금처분소득 등의 근로소득 등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된다.

이러한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에게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② 근로소득세액공제방법

가) 일반적 세액공제 적용방법

산출세액의 30%(55%), 연 50만원 한도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만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상당액만큼 세액공제되며 공제세액의 한도는 연간 50만원이다.

단, 산출세액은 50만원 이하 부분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5를 세액공제한다.

◎ 계산산식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50만원까지×55% + 50만원 초과액×30% ≤ 50만원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2. 1. 1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2. 1. 1 개정)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시의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신청서류나 신고서류 등이 필요없다.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 혹은 1년급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시 세액의 30%를 곱하여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납부된다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해당액부분의 30%를 공제한다. 그러나 소득신고시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으로 인한 세액이 적다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거나 50만원 한도 중 일부금액만 공제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총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30%(55%) 공제

근로자의 근로상황에 따른 세액공제방법

-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30%(산출세액 50만원까지는 55%)공제 : 근로자의 1년분 근로소득세액산출세액의 30%(55%)를 공제하는데, 매월 분 세액공제 적용된 금액의 단순합계액이 아니라 연말정산 총 세액의 30%(55%)되도록 공제한다. 따라서 매월기준에 걸쳐 30%(55%)까지 공제안된 경우도 연말정산에서 30%(55%)를 곱하여 연 50만원 한도까지 공제된다.
- 신규입사자의 세액공제 : 직전 근무지가 있으면 직전 근무소득도 합산하

여 세액공제 30%(55%)를 계산한다.

매월 세액공제 관계없이 30%(55%) 재계산

매월급여의 변동이 심한 근로소득자인 경우 특정월에는 산출세액의 30%(55%)가 되나 다른 특정월에는 산출세액의 30%(55%)가 매월기준한도를 초과하여 기준금액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연말에 각월의 세액공제액을 단순합계하면 산출세액의 30%(55%) 혹은 한도금액 5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단순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산출세액의 30%(55%)를 곱하고 연간 50만원이 되는 금액까지 최대한 공제한다.

예를 들어 6개월간은 세액이 40만원이어서 30%(55%)인 22만원이 공제, 다른 6개월간은 세액이 200만원이어서 30%(55%)인 72.5만원이 한도 25만원($50 \div 2$)을 초과하여 25만원만 공제된 경우 세액공제액은 단순합산한 47만원($=22+25$)이 아니고 세액의 공제한도액인 50만원($240\text{만원} \times 30\%(55\%)$)와 50 중 적은 쪽) 전액이 된다.

일용근로자 소득에서도 55% 세액공제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자이므로 이러한 소득에서도 5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자는 일별로 계산하므로 일별산출세액의 55%를 계산하여 매월 단순합산한 세액이 공제금액이다.

다) 매월 원천징수시 세액공제방법

산출세액의 30%(55%), 연 50만원 한도

매월 원천징수시 세액공제액이 월 41,660원 범위를 초과해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55) 상당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한다.

중전에는 매월 41,660원 범위로 제한되고 연 500,000원으로 제한되어 월 초과액 때문에 연 500,000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삭제하여 매월 공제한도가 없어졌다. 그러나 간이세액표에는 월 41,660원 한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매월 급여 원천징수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월 41,660원 한도로 공제되어 매월 들쭉날쭉 금액이어도 연말정산시 총 세액

에서 세액공제액이 연 500,000원이 되도록 재조정된다.

세액공제가 이미 계산반영된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데 간이세액표는 이미 30%(55%)세액공제 혹은 월 41,660한도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다. 따라서 표에 따른 공제를 하면 된다(연말정산시 부족공제된 금액은 자동으로 제대로 계산됨).

상여지급시의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지급월수기간에 안분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월평균 급여의 산출세액에서 30%(55%)를 공제한다.

따라서 상여금을 합하기 전의 세액공제금액과 상여금을 합함에 따른 추가세액공제 합계가 매월 41,660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상여지급시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계산산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은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누어 다음 산식에 의거 세액을 계산한다.

-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상여+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급여/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급여에 대한 산출세액=상여에 대한 산출세액(지급대상기간은 회사의 사규 등에 정하고 있는 기간임)
-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 상여금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며, 2회 이상의 상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그 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함.

상여분 산출세액에서의 공제계산사례

상기 산식에서 상여금분만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이를 지급대상

월수로 나누어 당해 나누어진 금액에 30%(55%)를 곱하여 각 월의 상여분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추가한다.

【사 례】

- 상여분에 대한 세액이 $(90,000 \times 3) - (60,000 + 70,000 + 80,000) = 60,000$ 원이었다면
- 상여분 월별간이세액은 $60,000 \div 3 = 20,000$
- 상여분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상여 이외 정규		공제여부	공제금액
	급여	세액공제		
첫월분 : $20,000 \times 30\% = 6,000$		30,000		36,000
둘째월분 : $20,000 \times 30\% = 6,000$		41,660	한도액공제	41,660
상여월분 : $20,000 \times 30\% = 6,000$		41,660	한도액공제	41,660
18,000		113,320		119,320

법정잉여금처분상여의 세액공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월정액급여가 있는 자에 한하여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월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잉여금처분시의 상여원천징수는 상여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므로 공제금액은 상여액×기본세율(다단계)×30%(55%)가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상여처분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세액공제와 감면의 적용순위

세액공제와 감면의 적용순위

소득세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먼저 소득세감면이, 다음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가, 마지막으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공제액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 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 련 법 령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 등】

-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소득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8조에 따라 공제하는 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세액공제감면 순위규정 이유와 유형

본 법상의 세액공제항목은 그 세액공제 원인에 따라 공제의 필수성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자의 가처분소득에서 이미 배제된 항목, 이중과세적 항목 등은 우선공제 필요가 있고 저소득자에게 혜택이 되는 것도 우선공제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본 조는 감면과 공제중에서 감면을 우선 적용하고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 공제를 이월되지 않는 것보다 먼저 공제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가능성을 보다 연장하였다.

세액공제한도와 순서 적용방법

본 법 및 조특법상의 소득세액공제는 모든 공제액을 합한 금액을 일괄 공제하는데, 이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세액공제액 합계액이 산출세액 합계액을 초과하여도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는 당해 법내의 최저한세 규정의 한도와 이월공제규정을 따른다.

4) 근로소득세액의 감면

(1) 세액감면의 의의와 계산

외국인 근로소득세의 면제

정부간 협약상 과건된 외국인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신청하여야 하나 착오 오류로 신청 안해도 감면은 가능하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98년말까지는 본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있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개정한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18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면제대상자와 기간 : 기술·엔지니어링 등 분야 외국인기술자[최초 근로제공일(2014년 12월 31일까지임)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날(2014년 12월 31일까지)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면제세액계산 :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2년간 50% 면제함.



● 소득세법 제59조의2 【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9. 12. 31 신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2009. 12. 31 신설)

세액감면의 목적과 이중과세방지 등

본 법상의 과세소득인 경우도 국제적 인적자원과 기술의 교류 및 국제적 이중과세방지 등의 차원에서 특정요건을 구비하면 당해 소득세액을 면제해 주는데 이를 세액감면이라고 한다.

이러한 감면세액은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소득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만 감면이 되는데, 다른 소득과 같이 정상적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득세감면신청서 제출 등의 신청행위에 의거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감면소득과 비과세소득

본 조는 주로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에 대해 근로소득 등의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감면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에 대한 급여의 혜택은 비과세라는 개념으로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과세는 저열한 형태의 소득이다.

그러나 감면은 어느 정도의 소득은 되나 국제간 정책이나 협약·법률 등에 의한 특별한 유인책이다. 따라서 감면은 신청이 필요하나 비과세는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용된다.

적용규정 비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감 면 소 득	비 과 세 소 득
• 개념규정	소득세를 면제함의 표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의 표현
• 과세소득에의 포함여부	특별규정없는 한 소득금액에 포함 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세액면제 공제형식을 취함.	각 소득금액계산상에서 일단 공제하며, 과세소득에 불포함.
• 신청여부	일반적으로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비과세신청이 불필요

감면세액 계산방법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 세액감면금액

$$=(\text{중합소득금액} - \text{인적사항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times \text{다단계 기본세율}$$

$$\times \frac{\text{감면대상근로(사업)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즉, 본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의 기본공제와 장애자공제·경로우대공제·부녀자세대주공제 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관련지출·기부금 등의 특별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단계 누진 기본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대상 근로(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할 세액이 계산된다.

■ 최종납부세액의 계산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면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감면은 당해 연도의 소득비율로 적용되며 세액공제는 세액의 선납세액으로 차기로 이월되기도 하므로 감면세액을 먼저 빼고 공제를 나중에 뺀다.

(2) 세액감면대상소득

① 협약상 파견 외국인 급여

정부간 협약에 의거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쌍방이나 일방 당사국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여기서 급여라는 규정표현상 근로소득만 감면하고 근로소득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소득은 전혀 감면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형태로 지급받아야 한다.

② 비거주자 등의 외국항행소득

■ 상호면세조건부 항행소득

거주자 중 비국적자와 비거주자 등이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조건으로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외국항행사업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되는바, 이는 국제간의 상호면세주의를 적용한 개념이다.

③ 기타법 및 조특법상의 감면소득

감면계산방법과 절차준용

본 법 이외 기타 법률에 의하여도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당해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지만 특별규정이 없으면 본 조의 감면세액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도 근로제공일로부터 2년간 근로소득세를 50% 면제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50%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
감면면제 대상자 범 위	외국인 기술자(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상 기술제공자, 연구원, 제조업 등의 고급기술자 등, 기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일반외국인
감면대상 소득범위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외국인이 받는 급여
감면적용 기간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날(2014년 12월 31일까지)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절차와 신청요건	세액면제신청서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신청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외국인의 급여 등 근로소득만 해당

감면대상소득은 외국인이 받는 급여 등의 근로소득만이다.

본 법상의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모두 해당되므로 상여처분소득·잉여금처분소득 등도 모두 해당된다.

이밖에 퇴직시 지급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감면대상 기간

기술도입계약상의 외국인 급여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날(2014년 12월 31일까지)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만에 대하여 면제하는데 여러 개의 기술도입계약이 있다면 각 계약건 별로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또한 발생하는 소득의 개념이므로 근로제공후 대가확정되었으나 미지급된 급여계정의 소득까지 감면대상이 된다.

(3) 세액감면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행위

세액감면적용의 신청을 하는데 신청서 제출이 필수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급여나 소득도 감면적용이 된다.

한번 신청으로 변동없는 한 2년간 계속유효

감면은 사유발생외국인에게 2년간 계속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외국인의 세액감면요건이 있다면 급여발생전이나 종합소득신고납부전에 감면신청한다. 매월 급여의 경우도 감면되는데, 1년간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후에 감면신청하였더라도 전체기간에 대해 감면한다.

그러나 사업소득의 경우는 당기의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이때에 감면신청서를 내면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감면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지급받기 전의 한번 신청으로 향후 매번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이 감면요건은 아니라도 과세관청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신청서를 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내어도 납세자의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감면적용한다.